

NEWSLETTER 886

Nov 10, 202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안내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12호)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금 번 개정은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연장 및 감면 대상물품 확대와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안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및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II. 개정 내용

1. 공장 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 기한연장 및 대상물품 확대

-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삭 제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 분과 같다.	④ ----- -----.
1. 1의2. 삭 제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2. ----- -----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	가. -----

하는 경우: 100분의 30(2023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2024년 12월 3
1일-----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
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
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3년 12월 31일까
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나. -----

-- 2024년 12월 31일-----

- 공장 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 대상 물품에 머시닝센터 등 3개 물품을 추가(전체 대상물품은 붙임2에서 확인).

2.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확대

-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23. (생 략) 24. <신 설>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좌 동 1.~ 23. (현행과 같음) 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운송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 태를 측정·기록하기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8일 까지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qwer0318@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문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12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붙임2] 231107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Contact



양다운 관세사

T 02-6011-3056
E dyyang@esein.co.kr



이재훈 관세사

T 070-4353-1553
E jhlee2@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